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1-5 사증 발급 기준

(2026.1.5., 주베트남대사관)

구 분		주요내용
입국 절차 등		○ 재외공관에서 F-1-5(방문동거, 90일) 사증 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초청 자격 (한국측)		○ 한국인 배우자, 국적·영주자격 취득한 결혼이민자 ※ 단,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초청 가능
초청 사유 (자녀의 양육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		④ 원칙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⑥ 한부모 및 다자녀(3명) 가정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예시 : 2026년 현재, 사증 신청일 기준 1. 자녀가 2017년생(한부모·다자녀 가정은 2014년생)인 경우 2026년 9월까지만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음 2. 자녀가 2016년생(한부모·다자녀 가정은 2013년생)인 경우 초청할 수 없음 ⑦ 인도적 사유 : 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중증 장애 가 있는 경우
초청 인원 (체류 가능 인원)		○ 결혼이민자의 부모 : 2명 ○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 : 1명 ※ 다른 가족을 초청했다면 부 또는 모 초청 불가, 부 또는 모를 초청했다면 다른 가족 초청 불가
초청 횟수 (첫째 자녀부터 우선 적용)		④ 원칙 : 자녀 1명당 2회 ※ 부모 모두를 초청한 경우 2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 ⑥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 ⑦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피초청 자격 (베트남측)	원칙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동시 초청·체류 가능)
	예외	○ 결혼이민자의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다른 결혼이민자의 의붓형제자매는 초청대상에서 제외), 전혼관계 출생 자녀 (미성년자 불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단, 위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 질병(암, 거동 불편 등) 또는 장애,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 2.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증 발급 제한	초청인	○ ‘초청인’이 불법고용, 허위초청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초청인’이 초청한 본국 가족 등이 과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5년간 초청 제한 (단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간 초청 제한) ○ 본국 가족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초청 제한
	피초청인	○ 신청인에게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등 법위반 경력이 있으면 5년간 사증발급 제한
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	자녀 연령 등 기준	④ 원칙 :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⑥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⑦ 인도적 사유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입국일 기준	○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 또는 4년
기타 유의사항		○ 이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초청인이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증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F-1-5)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

①/② 자녀 양육지원이 목적인 경우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 서류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수수료(미화 30달러)	
	2	○ 초청장	붙임1
한국 서류	3	○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붙임2
	4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붙임3
	5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재혼·입양한 경우>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7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8	○ 주민등록표 등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9	○ 자녀의 재학증명서(초·중·고등학교만 해당) ※ 주된 양육지원 대상 자녀 1명 것만 제출해도 무방	
	10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11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베트남 서류	12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13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 CT07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14	○ 신분증 사본	
	15	○ 결핵 진단서(지정 병원에서 발급)	
	16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호구부 등> ○ 호구부- CT07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이하 같음) ○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17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진단서 등> ○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국립·공립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의 진단서만 인정):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및 소명자료 ※ 단, 이상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유의사항】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
 ⑦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예정

◎ 인도적 사정(중증질환·중증장애)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 서류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수수료(미화 30달러)	
	2	○ 초청장	붙임1
한국 서류	3	○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붙임2
	4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붙임3
	5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재혼·입양한 경우>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7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8	○ 주민등록표 등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9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10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11	<중증질환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진단서 등에 '중증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12	<중증장애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	
베트남 서류	13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14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CT07(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15	○ 신분증 사본	
	16	○ 결핵 진단서(지정 병원에서 발급)	
	17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호구부 등> ○ 호구부-CT07(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 【유의사항】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
 ⑦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예정